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655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5. 선고 2019가소3196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25,000원 및 2020. 3. 21.부터 인천 서구 C 도로 151.3㎡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7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는 인천 서구 C 도로 45㎡, E 도로 106.3㎡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두 필지 토지는 2018. 11. 13. 인천 서구 C 도로 151.3㎡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인천 서구 F 대 660㎡, G 답 1,070㎡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D와 원고는 2007. 1. 11.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D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인천 서구 H 답 654㎡ 중 일부의 인도 등을 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977,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에서 2007. 11. 15.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D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통행 등 사용에 동의하고, 피고는 위 토지사용 대가로 D에게 2007. 12. 1.부터 D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중단일까지 연 400,000원을 매년 11. 30.에 지급한다(이는 후불이며, 최초 지급일은 2008. 11. 30.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9. 2. 18. 200,000원, 2009. 6. 7. 200,000원, 2010. 3. 25. 200,000원, 2010. 12. 6. 400,000원, 2013. 5. 8. 800,000원, 2013. 12. 27. 400,000원, 2014. 12. 23. 400,000원, 2015. 12. 23. 400,000원, 2016. 10. 30. 4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D가 사망한 이후에는 2017. 7. 12. 200,000원, 2017. 11. 20. 400,000원, 2018. 11. 21. 400,000원, 2019. 11. 23.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승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D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는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피고가 유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8. 21.부터 감정일인 2020. 3. 18.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3,925,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연 470,500원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25,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20. 3. 2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7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의 또는 추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와 함께 종전 소송에 관여하여 조정에 동의하였고, D가 사망한 이후에도 연 400,000원씩을 수령하여 위 조정조항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종전 소송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조정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받기로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

피고는 D와 원고에게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여 차임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D에게 입금한 합계 3,400,000원에 관하여 본다.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D에게 2007.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13. 8. 20.까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288,219원[= 400,000원 × (5년 + 2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D와 원고는 부녀사이인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D에게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계속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D에게 입금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D와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구분하여 주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에게 입금한 합계 3,400,000원 중 D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상응하는 위 2,288,219원을 초과하는 1,111,781원(= 3,400,000원 - 2,288,219원)은 원고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D와 원고,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지급한 돈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D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결과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더 많아지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대가로 합계 1,400,000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11,781원(= 1,111,781원 + 1,400,000원)을 변제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13,219원(= 3,925,000원 - 2,511,781원) 및 2020. 3. 2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7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이효인, 판사 소병진